환경부 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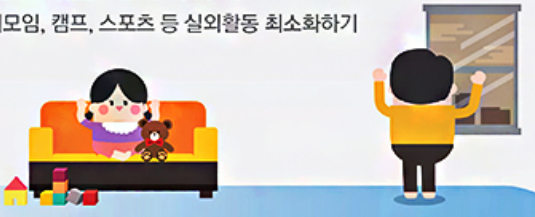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평시 환기	조리 시 환기
ㅣ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ㅣ 하루 3번 30분 이상(오전 10시~오후 9시) 환기 실시 ㅣ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회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ㅣ 주방후드 기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ㅣ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457-06

전라도천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2023년 4월(제366호)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Ⅰ 새로운 판례

1. 실화 ····· 7
2.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 9
3. 자동관리법 위반 ····· 15
4. 업무 방해 ····· 17
5.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9

Ⅱ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 21
2.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25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 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30
4.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34
5.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 39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1. 건축(단독주택)신고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43
2.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55
3.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청구(제3자) ····· 59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 64

2.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65
3.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66
4.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67
5.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 68

V 법무단신

1.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라고 자백… "형 감경해야" ····· 69
2. 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가해학생 측에 넘긴 교사… 벌금 300만 원 확정 ····· 71
3. 무리한 반복 소송 막는 '프로소송러 방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3
4.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안돼 ·· 74
5.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 76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8
· 행정기본법 ····· 80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다문화가족 ····· 84
· Multicultural Families ····· 96
· 多元文化家庭 ····· 103
· Gia đình đa văn hóa ····· 109

VIII 법제처 법나들이

· 학교폭력 예방법 ····· 113

Ⅰ. 새로운 판례

1 실화

*** 대법원 2022도16120**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는 한편,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

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 모두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공동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들 각각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함. 다만,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며 상고를 기각함

2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2018다207076**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약관의 성질(보통계약 약관) 및 그에 대한 무효판단기준, 2.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약관을 작성하였는지(소극), 3. 누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4.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

1. 기본공급약관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판단기준

가.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다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은 같은 법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가. 1) 구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정한 전기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본공급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그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특히 기본공급약관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처럼 관련 규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작성 이후에도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작성·인가·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상당수가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공급약관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구 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호), 전기위원회는 그 산하에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구 전기사업법 제59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그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도입 자체가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

가. 1)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7헌가25 결정 참조). 이처럼 한정된 자원인 전기의 효율적 배분을 위

하여,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구 전기사업법 제1조, 제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전기요금의 체계가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 사건 고시 제9조 제1항),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 조정요금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2) 이처럼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이하 '이 사건 누진제'라고 한다)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누진요금의 도입요건, 즉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여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설령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구간별 전기요금이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 등

가. 1)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이때 총괄원가란 적정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8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그런데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원가검증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은 재무제표, 제조원가증명서 등 회계자료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2항),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등의 산출근거나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관련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총괄원가를 기초로 산정된 용도별 전력의 공급원가, 이하 '종별원가'라고 한다)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한편, 적정투자보수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이 사건 고시 제15조). 이때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이 사건 고시 제17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 이윤은 적정 원가와 함께 전기요금을 구성하므로(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결국 관련 규정은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누진제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이하 '이 사건 누진요금'이라고 한다)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전기판매사업자(피고)와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법 제6조), 기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주택용 전력에 관한 이 사건 약관의 효력 판단 시 규범통제기준이 아닌 약관법 제6조를 적용하되, 그 약관의 특수성(=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포함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누진요금제가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원고들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자동관리법 위반

*** 대법원 2022도4793**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검사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튜닝작업이고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위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한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튜닝승인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튜닝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4 업무 방해

*** 대법원 2019도7446**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 000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2016.경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위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이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이 아닌 사정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5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대법원 2020도5336**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음을 이유로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참조).

☞ 경찰은 2019. 3. 5. 피의자가 甲으로, 혐의사실이 대마 광고 및 대마 매매로, 압수할 물건이 '피의자가 소지, 소유,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취급 관련자료 등'으로, 유효기간이 '2019. 3. 31.'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2019. 3. 7. 그에 기해 甲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하였음

☞ 경찰은 2019. 4. 8. 甲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대마 구입 희망의사를 밝히는 피

고인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확인한 후, 甲 행세를 하면서 위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하여, 2019. 4. 10.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한 다음 2019. 4. 12.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음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시점까지 경찰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메시지 등의 정보 취득은 영장 집행 종료 후의 위법한 재집행이고, 그 외에 경찰이 甲의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정당한 접근권한도 없으므로, 이 사건 메시지 등을 기초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쟁점 공소사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Ⅱ.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각주: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이하 "창고시설등"이라 함)의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각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며, 이하 같음.)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답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시설등이라면 같은 항 단서 중 방화구획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창고시설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을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화구획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 등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내력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으로서 거실

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 방지 효과 등 화재 안전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이더라도 그 거실의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게 되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현실적·물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 8. (생 략)

②·③ (생 략)

사례2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및 경안천(각주: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함.)의 양안(兩岸) 중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고 함)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가목에서는 설치제한시설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구 한강수계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한강수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각주: 수변구역 지정이 구 한강수계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지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전제함.) 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수변구역 지정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설로 이용되던 시설이 있었으나 이후 그 식품접객업이 폐업(각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신고) 한 경우를 전제함.)

된 경우, 다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것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금지되는지?(각주: 종전 영업시설의 물리적인 변경은 없으며,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것도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 유

우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시설 등 특정한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 전체를 설치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수변구역에서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물리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업행위 자체를 수변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변구역 안에 위치한 시설에 물리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영업이 영위되지 않고 있던 상태의 시설을 같은 내용의 새로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수변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 등은 일정 기한 내에 특정 수준의 오수처리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 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3조 역시 수변구역 지정 전에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 중이던 영업자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고, 잠정적으로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그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417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구 한강수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적법하게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수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인 종전 영업자의 영업행위 자체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폐업 이후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더 이상 같은 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종전과는 별개의 새로운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는 수변구역 지정 이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오염원의 신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적법하게 영업 중이던 영업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오염원이 신규로 입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종전의 영업이 폐업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1. 2. 1. 회신 20-0700 해석례 참조), 같은 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뿐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77 해석례 참조)인데, 이 사안과 같이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허용되던 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수변구역 지정 이후 식품접객업을 폐업하였다면 그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하여 해당 시설을 식품접객업에 이용하려는 것은 설치제한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변경”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것도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금지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 8. (생 략)

② ~ ④ (생 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區間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區間에 한한다) 및 경안천(河川法에 의하여 지정된 區間에 한한다)의 양안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부 칙

제3조 (수변구역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사례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8조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0호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등록전환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유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특정 행위 등이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

(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779 참조)이고, 같은 조에서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등록전환이 토지소유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른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항을 토지의 등록전환을 해야 할 요건으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이라는 문언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전환 신청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 제도의 시초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01호로 「지적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토지의 이동(異動)(각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토지의 이동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28호 참조)에 대한 신청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같은 법 제16조라는 점(각주: 1975. 11. 24. 의안번호 제90478호로 발의된 지적법개정법률안 의안원문 및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된 「지적법」 제정·개정이유 참조)과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로 「지적법」이 폐지되면서 그 내용을 승계하여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1273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그 제명이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바뀐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역시 종전의 「지적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 규정의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은 2020년 6월 9일 대통령령 제30775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대상으로 삼던 것을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같은 조에 따른 등록전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 그 개정취지이므로(각주: 2020. 6. 9. 대통령령 제30775호로 일부개정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그 개정 전과 달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을 토지소유자의 의무 사항에서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간정보관리법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등록전환은 토지의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 등을 관리함으로써 지적관리의 합리화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다 정확한 사실증명의 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공적 취지의 제도인데(각주: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4709 판결례 참조),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등록전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토지소유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공부 등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같은 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비록 「지적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전환 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로 「지적법」을 폐지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행위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일 뿐(각주: 2009. 8. 26.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장금 합리화 방안」참조), 등록전환 신청 자체를 의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을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7. (생 략)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생 략)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 34. (생 략)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사례4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농막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될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제4호), 건축물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제3호라목)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농막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재배농지"라 함)의 지상에 설치하는 정화조(농막의 일부로서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옥외에 설치하는 정화조를 말하며, 이하 "정화조"라 함)가 있는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

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이 유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농지법령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각주: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47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인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경우 그 부지가 "농지"로 인정되고, 그 설치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각주: 「농지법」 제2조제7호 참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막을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는바, 농막의 의미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는 재배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는 농막의 규모를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호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나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에서 농막의 규모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한 입법취지가 방만한 농막의 설치로 인한 '재배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4. 4.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같은 호의 위임 근거 규정인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라목에서는 그 부지를 농지로 보는 시설로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농막'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농막 중 일부 시설의 부지라고 해서 농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취지 및 상위법령의 문언·체계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 등이 없이 재배농지의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연면적'은 전체로서의 농막이 차지하는 재배농지의 면적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은 본래 주거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수세식 변기 및 그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는 농막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농막의 일부로서 설치가 허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인데(각주: 농지법령에서는 농막에 수세식 변기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농지업무편람(2023년)에서는 농막의 시설로서 정화조를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제4호에서는 화장실을 농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이나 국가 등이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배농지의 지상에 농막의 일부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배농지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은 화장실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농지 전용 없이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규모를 판단할 때 정화조가 차지하고 있는 재배농지의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규정체계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농지법」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막을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막에 데크, 정화조 등 부대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는 재배농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농지업무편람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정화조의 경우에도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에는 그 면적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배포하여 온(각주: 2020년(농막의 연면적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대면적 포함하도록 규정) 및 2023년(농막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하나로 정화조 명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참조)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산정과 관련된 것이고, 농지법령에서는 농막의 연면적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기준이나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여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 이 사안 정화조의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

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서 모두 제외시킬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재배농지를 차지하는 농막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려는 「농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지법령, 나아가 건축법령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농막의 인정 기준, 규모 및 면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8.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 다. (생 략)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3.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 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 하. (생 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 바. (생 략)

5.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사례5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각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가(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산소득 요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가액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그 주택 지분을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각주: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한 후, 같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잔금을 공동 납부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 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해당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라 감면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되므로(각주: 법제처 2020. 5. 21. 회신 20-0183 참조), 그 취득세의 감면 여부도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각주: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8742 판결례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사인간 부동산 매매 등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하여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지분

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부부 일방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같은 항에 따라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최초로 주택 전체를 취득할 때 감면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조의 입법취지(각주: 2013. 5. 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3. 4. 9. 의안번호 제1904457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⑥ (생 략)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건축(단독주택)신고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단독주택) 신고 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1. 5. 6.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1,272㎡(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6. 23.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8.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신고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 자체를 불허가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사업부지 인근에 ○○해수욕장이위치하고 있

어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미관 저해, 환경오염, 주변 난개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데, ①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수련원 및 ○○호텔에 비하면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매우 작은 규모이며, 해수욕장에 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미관 저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②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될 이유도 없고, 그 위험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부존재한다.

3)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2014. 8. 11. 이후 총 5회에 걸쳐 건축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결정 권한이 없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4)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매우 큰 규모의 ○○수련시설, 호텔, 펜션, 음식점, 7개동의 민박, 해수욕장 내의 대중음식점과 현재도 시공 중인 숙박시설 등이 산재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만을 불허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반한다.

[보충서면]

5)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하수가 백사장에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하수가 백사장으로 직접 배출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 하수가 유출될 가능성도 없다.

6) 피청구인은 ○○호텔은 ○○해수욕장 관광객들의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도 ○○해수욕장 관광객들의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동일한 조건이며,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로 인하여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제한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모두 대중음식점 또는 숙박시설물로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한 조건이다.

나. 피청구인

1) ○○해수욕장은 ○○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피서를 즐기는 곳인데,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직접 연접하며, 해수욕장 정중앙부에 위치한다. 이 사건 신청지 좌우로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들이 백사장을 따라 길

게 분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3) 청구인이 언급한 ○○수련원 등 숙박시설 3개소는 모두 ○○해수욕장 북쪽 국도(○○호) 건너 또는 더 멀리 이격해 있으며, ○○호텔은 ○○해수욕장 서쪽 끝나는 부지에 자리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와 다른 조건의 허가 사례를 비교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4. 관계 법령

1) 「건축법」제11조, 제14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4) 「○○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1조, 제3조, 제4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1. 5. 6.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1,272㎡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1. 6.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8.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 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 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라) 「○○군 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 주요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수립과 실현방안 검토(개정 2018.12.27.)
2. 정부 및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개정 2018.12.27., 2021.09.24)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2018.12.27.〉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개정 1997.9.29)
6. 삭제(1997.09.29)
7. 삭제(1997.09.29)
8. 삭제(2014.04.08)
9. 삭제(2014.04.08)
10. 삭제(2009.01.09)
11. 삭제(2009.01.09)
12. 삭제 〈2018.12.27.〉
13. 삭제 〈2018.12.27.〉
14. 전염병 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7.9.29)
15. 삭제 〈2018.12.27.〉
16. 삭제 〈2018.12.27.〉
17. 삭제 〈2018.12.27.〉
18. 삭제 〈2018.12.27.〉
19.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1997.9.29., 2018.12.27.)
20. 삭제 〈2020.08.03.〉
21. 삭제 〈2018.12.27.〉
22. 삭제 〈2018.12.27.〉
23. 삭제(2009.1.9)
24. 삭제 〈2018.12.27.〉
25. 삭제(2014.04.08)
26. 삭제 〈2018.12.27.〉
27.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1997.9.29.)

28. 삭제 〈2018.12.27.〉
29. 삭제 〈2018.12.27.〉
30.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1997.9.29., 2018.12.27.)
31. 삭제 〈2018.12.27.〉
3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1997.9.29)
33.「○○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한 제안 및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3, 개정 2014.04.08)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4.08)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04.08)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8, 2021.09.2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9.29)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 자체를 불허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고 판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살펴보면,

①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수련원 등 숙박시설 3개소는 모두 ○○해수욕장 북쪽 국도(○○호) 건너 또는 더 멀리 이격해 있으므로 ○○해수욕장과 연접한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며, ○○호텔도 ○○해수욕장 서쪽 끝나는 부지에 자리하여 ○○해수욕장의 중앙부

에 위치한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②판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사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만으로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미관 저해, 환경오염, 주변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해수욕장의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변 자연경관 훼손 등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바) 또한 청구인은 결정권한이 없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는 바,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반드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결의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이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1. 8. 4.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1. 8. 4. 피청구인에게 ○○○ 조성 관련'○○시 ○○읍 ○○길 ○○ 토지·건물 매입 관련 공문, 거래 내역'(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게'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공개 가능함'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8. 27. 피청구인에게'지자체 매입 건은 열람가능 문서'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 관련 정보공개청구 안건이 기각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2021. 8. 4.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보상금 받은 당사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인의 토지를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다.
2) 세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금액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지자체는 매년 토지매입 관련으로 결산을 내는데 이것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다.
3)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과 지자체 간 보상금을 위한 유착관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8조에 근거하여 2021. 9. 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정보공개청구 안건은 기각되었다.
3) 또한, 상급기관 유사 검토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번별 성명 및 보상금액을 ○○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가 행정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 될 경우, 토지보상을 받을 사실과 보상금액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보상을 받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보상금액을 노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결(2021.5.12.)한 바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리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1. 8.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시 ○○읍 ○○길 ○○ 토지·건물 매입 관련 공문, 거래 내역
2)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상금 수령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권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가능
3) 청구인은 2021. 8.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의신청 이유: 지자체 매입 건은 열람 가능 문서임
4) 피청구인은 2021. 9. 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21. 9. 13.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 안건이 기각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주문이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상금 수령 당사자의 재산 등 개인정보보호 필요
5)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인의 토지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다수 필지의 보상금액이 아닌 특정한 물건(○○시 ○○읍 ○○길 ○○ 토지·건물)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 보호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등과 물건소유자의 성명,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물건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가능하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141쪽 참조).

다) 또한 청구인은 지자체가 매년 토지매입 관련으로 결산 자료를 공개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자체 결산 자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의 일환이므로 청구인의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청구(제3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외 학교법인 ○○○에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외 학교법인 ○○○은 2020. 12. 22.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16.68㎡(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학교 상징 ○○조형물(철근콘크리트, 1.39m*15.3m*9m, 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23. 청구외 학교법인 ○○○에게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8.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외 학교법인 ○○○에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외 학교법인 ○○○가 2020. 12.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고, 청구외 학교법인 ○○○과 피청구인이 사전 공모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허위이다.
2) 청구외 학교법인 ○○○가 2020. 12. 22.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2. 22. 현장확인을 어떻게 하였는지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생각하기에는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였다는 것도 허위이다.
3) 기존에 이루어졌던 불법 도로점용과 불법 공작물의 설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허위이다.
4)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피해자로서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은 2019. 1. 18. 청구외 ○○○대학교에 불법 공작물 철거 계고를 하였는데, 청구외 ○○○대학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투지 않았으므로 ○○○ 조형물은 불법공작물임이 명백하다.

6) 탄원서 등은 일방적 주장으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며, 사립학교의 교문을 왜 공공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7) 이 사건 처분은 3개 이상의 법률이 복합되어 단순히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 건축복합민원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8) 청구인의 2019. 8. 14. 도로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건은 청구인의 취하와 공소시효의 완성 때문에 각하된 것일 뿐, 청구외 ○○○대학교가 도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니다.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을 학교 상징 ○○○ 조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불법 공작물은「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6호에서 지칭하는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0) 이 사건 처분은「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5항 [별표2] 도로점용허가기준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순번	일 시	내 용	행정청
1	2018. 12. 24.	청구인의 민원 1차 접수	○○시장
2	2019. 1. 14.	청구인의 민원 2차 접수	○○시장
3	2019. 1. 18.	○○○대학교에 불법 공작물 철거 계고	○○시장
4	2019. 8. 14.	청구인이 ○○○대학교총장과 학교법인 ○○○○ 이사장을 상대로 도로법 위반 혐으로 고발	○○지검
5	2019. 8. 30.	○○○대학교는 불법 공작물 철거 계고에 대한 회신 제출	○○지청
6	2019. 9. 3.	청구인의 고발 취하서 제출	○○시장
7	2019. 10. 8.	불기소이유 통지(고발 취하, 도로법 공소시효 완성)	○○경찰서
8	2020. 6. 23.	청구인의 민원 3차 접수	○○지검○○지청
9	2020. 8. 21.	○○○대학교에 ○○○ 조형물 철거 이행 촉구	○○시장
10	2020. 8. 24.	○○○대학교는 ○○○ 조형물 존치 회신 제출	○○시장

11	2020. 9. 1.	○○○대학교에 도로점용부분 원상회복 명령	○○시장
12	2020. 9. 4.	○○○대학교는 원상회복 명령 이의신청 제출	○○시장
13	2020. 11. 17.	○○○대학교는 직원, 학생, 동문 6,183명 탄원서 제출	○○시장
14	2020. 12. 22.	○○○대학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장
15	2020. 12. 23.	○○○대학교에 도로점용허가 통보	○○시장
16	2021. 8. 30.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회

2) 피청구인은 청구외 ○○○대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는 바, 청구외 학교법인 ○○○과 피청구인이 사전 공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은 ①○○○ 조형물의 관리자가 개인이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자가 아닌 학교라는 점, ②○○○ 조형물의 사용목적이 학교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교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 ③○○○대학교가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배출한다는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 법령

1) 「도로법」제61조
2) 「행정심판법」제13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8. 12. 24., 2019. 1. 14. 피청구인에게 “2018. 12. 8. 차량이 미끄러져 이 사건 조형물에 부딪혔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형물은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므로 철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외 학교법인 ○○○은 2020. 1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학교 상징 ○○조형물인 이 사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23. 청구외 학교법인 ○○○에게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8.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가)「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판 단

가)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있기 전 이 사건 조형물에 청구인의 차량이 부딪혀 파손되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 규정에 따른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2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3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4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동료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자, 이제부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합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V. 법무단신

1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라고 자백… "형 감경해야"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감경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197).

A 씨는 2019년 11월 B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에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 하단에 자필로 'B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달라'고 기재해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앞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B 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이를 따지자 A 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인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A 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감경 없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만, 1심은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 및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각 기재하고도 양형의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기재했다"며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 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가해학생 측에 넘긴 교사… 벌금 300만 원 확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측에 넘긴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 A 씨는 2016년 2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측의 재심 신청으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6년 1월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 사과)과 2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2016년 2월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2015년 4월 받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진정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만든 뒤 이를 A 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학교폭력 업무 처리 담당자였던 A 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행정심판 등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받고 이 같은 의견서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고 심지어 그 내용이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그대로 언급됐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의견서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3 무리한 반복 소송 막는 '프로소송러 방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권 남용 등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프로소송러 방지 3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원고가 청구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소권을 무리하게 남용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하는 소권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사법정책연구원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2020년 한 해에만 23036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특정인이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전국 법원에 3462건의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이 무변론 각하 판결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고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은 필요 최소한의 인지액을 설정해 인지액 미납 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및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소송의 경우 종이소송과 달리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기록되면 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소권 남용 사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소송 시 법원 직원의 보류 사유 심사 후 전자적 접수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4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안돼

집총이나 군사훈련 수반 않는 복무 이행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도15554(2023년 3월 16일 선고)

[판결 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쟁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복무 이탈한 것이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 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했다. A 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둔 2015년 12월 중순 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의 법리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관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어 병무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조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관계자]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5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며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9918㎡의 5047/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임야의 2/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임야 9918㎡ 중 약 8.7%에 해당하는 865㎡를 직접 점유하며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시와 평시 임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는 훈련과 작전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토지 전체에 산재해 있어 국가가 토지 전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 및 사용중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군사시설은 토지 전체에 골고루 산재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토지 전체가 제한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A 씨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국가에 6300여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사시설 철거 의무 등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해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해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토지의 2/6060 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5047/6060의 지분을 보유해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인 A 씨는 공유물의 보존관리 행위로서 국가에 군사시설의 철거 및 이 시설이 설치된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래에도 군사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므로 A 씨는 국가에 군사시설의 사용금지 또한 구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A 씨가 군사시설의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금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Ⅵ. 최근 개정 시행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 [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각급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한편,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8조제1항, 제28조 및 제30조제2항).

나.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제1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 법률 제18916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학교환경교육의"를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로,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학교환경교육에"를 "환경교육에"로,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의"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로, "교육부장관에게"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학교·법인, 제15조제1항"을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학교·법인·단체"를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학교·법인 및 제15조제1항"을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함.

나.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제14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행

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8조 및 제19조)

1)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은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함.

라. 자동적 처분(제20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제23조)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하고,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하도록 함.

사. 공법상 계약(제27조)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체결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아.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제34조)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제36조)

1)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정을 통보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차.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제37조)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카. 행정법제의 개선(제39조)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전해철

◉ 법률 제17979호 행정기본법

부칙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Ⅶ.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의 생활

사회적응 지원

□ **사회적응 지원 등**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건강검진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2항).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이를 이수 시 국적 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에서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 제공
  -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인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남녀 결혼이민자용 다양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한국생활이용가이드 책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

-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등은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교육
  - √ 누리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동영상, 교재 제공
  - √ 고려사이버대학교 미래교육원 바른한국어
  - √ 재외동포재단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등 제공
  - √ 국립국제교육원 KBS, 배재대, 서강대 등 한국어 사이트 안내
  - √ EBS 두리안 한국어배움터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문화동화 구연
- 오프라인 교육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역별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실 수강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교육

- 가족교육(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안내(Ⅰ)』,〈2023. 1.〉, 157쪽 참조)

항 목	내 용	
내 용	•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한 믿음과 사랑증진 •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증진 •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로 소통증진 및 다문화 정체성 함양	
대 상	• 다문화가족 등(센터 회원 정의 참조)	
세부 내용	공통필수(14시간 이상)	선택(예시, 26시간 이상)
	•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프로그램 (연간 10시간/20가정) ※ 이중언어코치 배치센터는 160시간 이상 실시 (가족사업안내 제2권 p. 253 참조)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 (부모 대상, 연간 4시간 이상) ※ 상·하반기 각 1회	•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 아버지교육 •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 자녀교육프로그램 / 자녀성장지원사업 등 •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 국내체류 결혼이민자의 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교육프로그램 • 다문화 한부모 양육·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 그외의 성평등·인권 교육, 사회통합교육, 상담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2023년 가족사업안내(Ⅰ)』, 159-1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격차해소교육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다음의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제4호·제4항, 「기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4항제3호).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 주요사업내용(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안내(Ⅱ)』, 〈2022.1.〉, 231~235쪽 참조)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통번역서비스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 모든 서비스는 무료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인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긴급지원 사업

- 긴급지원 사업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연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 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 방법

- 시·군·구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 전화

▶ 생활지원 전화

기관	전화번호	내용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기관안내 및 연계 생활통역 서비스(13개국어) 365일 24시간
국민건강보험	1577-1000 033-811-2000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3개국어) 평일 09:00 18: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오전 09:00 11:50, 오후 13:00 17:5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민사·형사·가사·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10:00 18:00
통역봉사서비스 (bbb코리아)	1588-5644	서비스 의뢰인, 외국인, BBB봉사자의 3각 통화로 이뤄지는 24시간 통역 서비스
120 다산콜센터 (외국어 상담)	120+9	생활정보, 관광정보, 대중교통, 예약서비스 등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09:00 18:00

주택 제공

□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 참조).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신청방법

-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특별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2023년 가족사업안내(II)』, 〈2023.1.〉, 383~394쪽 참조).

- 알선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최근 10

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서류
- 필요시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입양 확인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및 출산

□ 임신과 출산

▶ 다문화가족의 임신과 출산

-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

□ 임신·출산 서비스

▶ 임신·출산 서비스

- 다문화가족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 출생

출생신고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장소

-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

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출생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 ※ 아동양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상보육의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영유아보

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 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5호).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etc.

-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deavor to take measures such as for the education, publicity, and correction of unreasonable institutions, etc. to ensure that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in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s history, culture, and institutions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re entitled to receive education,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basic common knowledge necessary for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Social adaptation after acquiring Korean citizenship
  - · A foreign national residing in Korea who acquires Korean citizenship is entitled to receive the following benefits for 3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Article 12, paragraphs 1 and 3, and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s by marriage
    - √ Education on the institutions and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 √ Childcar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s by marriage
    - √ Medical support
    - √ Medical checkups
  - ※ Foreign nationals in Korea raising children born by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Korean nationals and their children are also entitled to receive the above benefits (Article 12, 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Social integration program
  · The program consists of Korean language courses, Korean social understanding courses, etc. to help immigrants to systematically acquire necessary information in their lives in Korea. Those who complete this program at designated agencies will benefit from the exemption of written and oral test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Please refer to the immigration & Social Integration Network (http://www.socinet.go.kr) for further details.
- Support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ducts
  · The national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intelligence information products to the marriage immigrant with or without charges (Article 49, Paragraph 3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and Article 45,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 Civil services and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 Foreign nationals in Korea and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entitled to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in foreign languages by an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via telephon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rticle 20, 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provides information, inquiry consultation, and an electronic inquiry desk via the main number (☎ 1345) for telephone consultations related to foreign nationals and the web portal for comprehensive support for foreign nationals (http://www.hikorea.go.kr).

Information provision

Provision of information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nformation related to learning and guidance for children and juveniles), living guide books,

and other information booklets which contain information on polici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successful settlement cases of immigrants, agencies such as child care centers,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etc.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Various guidebooks for living in Korea for immigrants by marriage can be downloaded on the web portal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Danuri homepage (http://www.liveinkorea.kr).

Educational support

Korean language education

- Immigrants by marriage, etc. are entitled to receive Korean language education, etc. to improve their language skills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education in various ways, such as through visiting education and distance education, to ensure that all immigrants by marriage, etc. and their spouses and family members have access to educational services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home environment, etc. (Article 6, paragraph 3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s essential to lead a better life in Korea and to better understand Korean culture. Many agencies offer free courses for foreign nationals to learn the language, and gradually more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are being provided online, allowing foreign nationals to learn at home during the hours that they want [Minwon24 (http://www.minwon.go.kr)].

· Online education

√ Nuri-Sejonghakdang provides Korean language education videos and learning materials

√ Cyber University of Korea learning campaign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provides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provides information on Korean websites such as KBS, Pai Chai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 EBS Durian Korean Learning Center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Multicultural Storytelling

· Offline education
√ The HiKorea website offers a lis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each region that provide offline Korean language education.
√ Please refer to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Korean language classes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ebsite for your region.

· Other education
- Family education (refer to the "Guide to 2022 Family Programs (I)," ,, p17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ategory	Contents	
Summary	• Strengthening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and love through communication • Promoting understanding of proper parenting • Promoting communication and fostering multi-cultural identity by using bilingual languages in the family	
Target	• Multi-cultural families, etc. (See p149, Definition of Members)	
Details	Common required courses (more than 14 hours)	Optional courses (examples, more than 26 hours)
	• Program to promote families to use bilingual languages (10 hours a year/20 families) ※ Bilingual coach-posted centers: 160 hours or more • Information on school admission and entrance exam for school-ag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parents, more than 4 hours a year) ※ Once each in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year	• Family communication program • Family relations improvement program • Understanding of marriage and family • Meaning and role of family • Father education • Parent-child relations and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 Child education program • Parental role education, and child health guidance • Child life guidance • Child growth support program, etc.

- For more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counseling education, etc., please refer to “2022 Guide to Family Programs (Ⅰ),” pp173-187.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program for immigrants by marriage

- Major program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Guide to Family Programs (Ⅱ),” ,)
  - Provision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to immigrants by marriage with weak Korean language skills to support their communication regarding family and social lif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are provided for languages including Vietnamese, Chinese, Filipino (English, Tagalog), Mongolian, Thai, Russian, Indonesian, Cambodian, Japanese, and Nepali.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 · Counseling for the early stage of residing in Korea for family lif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etc.
    - · Support for immigrants by marriage to settle in Korea;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grams related to nationality and stay
    -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support on the provision of living information andcounseling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for educational courses
    - · Interpretation services for family communications
    - · Interpretation services for use of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gencies (except notarization)
    - · Interpretation services for use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public health centers, police stations, and schools (except notarization)
    -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on emergency support for crises
    - · Othe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commissioned 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 All services are provided for free as a rule.
- Information on counseling and interpretation services for foreign nationals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02-3479-7600
  -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 1644-0644
  -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 1577-1366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 Eligible recipients
  - A registered foreign national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d who is qualified to receive benefits is an eligible recipient (Article 5-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 A person married to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 √ Where the person in question or the person's spouse,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regnant
      - √ Where the person raises a minor child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person in a stepfather-stepchild relationship, stepmother-stepchild relationship, or adoptive relationship)
      - √ Where the person shares livelihood or dwelling with his/her spouse's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A person who has been divorced from or bereaved of his/her spouse,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ither raises a minor child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s pregnant with a child of the deceased spouse
- How to apply
  - Application can be made at the local eup or myeon district office or community service center
  - Documents to submit: Application for provision (modific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benefits, declaration of income and property, consent to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Emergency support programs

- Emergency support programs
  - Among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Korea who suffer from fire, crime, or natural disasters not attributable to themselves, those corresponding to eligible recipients of emergency support may receive urgent livelihood support, medical support, housing support, support for their us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ducational support, fuel cost support for the winter season, support for costs arising from childbirth, funerals, fuel, etc.

- Eligible recipients
  -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become the recipients of emergency support (Article 5-2 of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and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 · A person who is married to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Among those who have divorced their spouse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whose spouse has passed away, any person who raises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A person recognized as a refuge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Refugee Act"
    - · A person sustaining damages from fire, crime, or natural disasters not attributable to him/herself
    - · Any other person who is recognized to be in need of emergency aid or support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How to apply
  - Applications can be made through the local si, gun, or gu district governments or the 129 Health and Welfare Call Center.

Housing support

Special supply of housing

- Special supply of public housing, etc.
  - As a member of a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head of a household who owns no home as of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for the recruitment of residents for national housing, a person who has resided in the same location for three years or longer with his/her spouse may be eligible to benefit from the special supply of one home for each household to an extent not exceeding 10 percent of the housing built for one occasion under the criteria of priority set by the head of the related agency. However, if approved by the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the special supply of housing may exceed the aforementioned 10% (Article 35,

paragraph 1, subparagraph 18 of the "Regulations on Housing Supply").

- How to apply
  - Those who wish to receive the special supply of national housing, etc. must refer to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special announcement for the corresponding public housing and file an application by submitting the following documents (refer to the "Guide to 2020 Family Programs (II)", 〈2022.1.〉, p40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 One copy of application
    - · One copy of form for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Documents demonstrating non-ownership of homes: Certificate for Taxation by Local Tax Item or Certification for Non-Taxable Local Taxes (Nationwide level in the past 10 years, for all household members)
    - * A homeowner who falls under Article 53 of the Rule on Housing Supply is deemed a non-homeowner
    - · Family relation certificate
    - · Certificate or abstract of resident registration
    - · Evidential documents on income
    - · If necessary: Documents demonstrating the applicant's acquisition of nationality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 certificate of nationality or identification (detailed) certificate, 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 certificate of adoption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and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confirmation of non-businessperson]

Pregnancy and childbirth

- Pregnancy and childbirth services
  - Pregnancy and childbirth services
    -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services.
      - · Immigrants by marriage, etc. are entitled to receive educ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dispatch of assistants for before and after birth, and medical services such as health checkups, along with interpretation services (Article 9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多元文化家庭

社会适应支援

对适应社会的支持

- 增进对多元文化的理解
  - 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为进行教育、宣传，修订不合理制度或采取其他必要措施，作出应有的努力，已让韩国国民和在韩外国人理解和尊重彼此的历史、文化与制度（《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8条）。
- 对社会适应的支持
  - 在韩外国人可得到在韩生活所需的基本素质和知识相关的教育信息和咨询等支持（《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1条）。
  - 取得国籍后的社会适应
    - · 在韩外国人取得韩国国籍后，可自取得国籍之日起3年内得到如下支持（《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2条第1项和第3项、第15条）：
      - √ 结婚移民者韩语教育
      - √ 韩国制度及文化相关教育
      - √ 对结婚移民者子女的保育和教育支持
      - √ 医疗支持
      - √ 体检
    - ※ 抚养在与韩国国民的事实婚姻关系中出生之子女的在韩外国人及其子女也可以得到上述支持（《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2条第2项）。
  - 社会统合课程
    - · 由帮助移民者系统了解在韩生活所需信息的韩语课程和韩国社会理解课程等组成。在指定机构接收此课程时，可得到免除国籍取得笔试和面试等便利。详情请参考社会统合信息(http://www.socinet.go.kr）。
  - 信息通信产品的支持
    - · 国家机关与地方自治团体可向结婚移民者等有偿或者无偿提供智能信息产品（《智能信息化基本法》第49条第3项以及《智能信息化基本法施行令》第45条第1项第3号）。

- 面向外国人的信访指南与咨询服务

· 在韩外国人和在韩滞留的外国人可利用电话或电子通信网，通过外国人综合咨询中心得到外语信访指南和咨询服务（《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20条第2项及《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施行令》第16条）。

※ 外国人综合咨询中心通过外国人专用咨询热线（☎1345）和外国人综合支援门户网站（http://www.hikorea.go.kr）提供信息指南、信访咨询，以及电子信访窗口服务。

信息支持

提供支持多元文化家庭相关信息

- 多元文化家庭可通过收录有多元文化家庭支持相关政策信息、移民者定居成功案例、托儿所等机构介绍，以及韩国文化介绍等内容的生活指南手册等获得在韩生活所需的基本信息（包括对儿童和青少年的学习和生活指导相关的信息）（《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1项及《多元文化家庭支援法施行令》第11条第1项）。

※ 多元文化家庭门户网站Danuri官网（http://www.liveinkorea.kr）提供男女结婚移民者专用各类韩国生活指南、韩国生活便利指南手册等。

教育支持

韩语教育

- 结婚移民者等可得到以提升沟通能力为目的的韩语教育等支持（《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1项）。
- 因居住地和家庭环境等因素而难以得到教育服务的结婚移民者等及其配偶、家庭成员可通过上门教育或远程教育等多种方法得到教育支持（《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3项）。
- 若要确保在韩生活顺利、理解韩国文化，学习韩语是必要条件。韩国有很多帮助外国人免费学习韩语的机构，线上韩语教育项目也在增加，便于外国人挑选合适的时间，在家轻松学习韩语【信访24（http://www.minwon.go.kr）】。

· 线上教育

√ Nuri世宗学堂 提供韩语教育视频和教材

√ 高丽网络大学 学习组织

√ 在外同胞财团 提供韩语学习平台、韩国文化信息等

√ 国立国际教育院介绍KBS、培才大学、西江大学等韩语网站

√ EBSDURIAN 韩国语学习区

√ 国立儿童青少年图书馆多元文化童话口述

· 线下教育

√ Hi Korea官方网站 提供韩国各地区的线下韩语教育机构信息
√ 所在地区的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网站提供韩语教室招生信息

■ 其他教育

- 家庭教育（女性家族部，《2022年家庭事业指南（Ⅰ）》，2022年1月，参考第171页）

项目	内容	
内容	· 通过家庭成员之间的沟通增进彼此的信任和爱 · 增强对父母角色的正确认知 · 激活家庭内部使用双语，增进沟通并提高多元文化认同感	
对象	· 多元文化家庭等（参考会员定义p.149）	
具体内容	必修（14小时以上）	选修（例如：26小时以上）
	· 营造双语家庭环境项目 （全年10小时/20个家庭） ※ 双语导师分配中心实施160小时以上 · 向多元文化家庭学龄期子女提供入学及升学信息 （以父母为对象，全年4小时以上） ※ 上、下半年各1次	· 家庭沟通交流项目 · 改善家庭关系项目 · 对婚姻与家庭的理解 · 家庭的意义与作用 · 父亲教育 · 改善父母与子女关系及提高自信心项目 · 子女教育项目 · 父母角色教育、子女健康指导 · 子女生活指导 · 子女成长支援事业等

- 其他性平等、人权教育、社会综合教育、咨询教育等相关具体信息请参考《2022年家庭事业指南（Ⅰ）》，第173-187页。

结婚移民者翻译服务

■ 主要内容（女性家族部，《2022年家庭事业指南（Ⅱ）》，2022年1月，参考第237~242页）

- 向韩语水平有限的结婚移民者提供在家庭和社会生活中进行必要沟通所需的翻译服务
- 提供越南语、中文、菲律宾语（英语、他加禄语）、蒙古语、泰语、俄语、印度尼西亚语、柬埔寨语、日语、尼泊尔语等语言的翻译服务。
- 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的翻译服务

· 就家庭生活与国家之间的文化差异等提供入境初期咨询服务
· 提供结婚移民者定居支持、国籍和滞留相关信息以及项目介绍
· 提供妊娠、分娩和抚养等相关的生活信息和咨询内容口笔译服务
· 提供教育课程口笔译服务
· 家庭成员之间的沟通翻译服务
· 使用行政或司法机构时的口译服务（公证除外）
· 使用医院、保健所、警察局或学校等公共机构时的口译服务（公证除外）
· 危急情况下的紧急支援口笔译服务
· 其他直接或间接支援多元文化家庭的个人或机构委托的翻译业务等

- 原则上，免费提供所有服务支持。

■ 外国人咨询及翻译服务介绍

- 韩国健康家庭振兴院 ☎02-3479-7600
- 韩国外国人劳动者支援中心 ☎1644-0644
- 移民女性紧急支援中心 ☎1577-1366

基础生活保障制度

■ 支援对象

- 完成外国人登录且符合下列任意一项内容的外国人中，具备《国民基础生活保障法》规定之补贴领取资格者可成为受惠权者（《国民基础生活保障法》第5条之2、《国民基础生活保障法施行令》第4条）。

· 与韩国国民维持婚姻关系且符合下列任意一项内容者：

√ 处于妊娠状态的本人或韩籍配偶
√ 抚养韩籍未成年子女（包括与继父或继母之间为收养关系的子女）者
√ 与配偶的韩籍直系尊属共同维持生计或生存者

· 与韩籍配偶离婚或该韩籍配偶死亡后，抚养韩籍未成年子女者或怀有已死亡配偶之子女者

申请方法

- 可在所在地区的邑面事务所或居民中心申请。
- 提交材料：提供（变更）社会福利服务及补贴申请表、收入财产申报表、提供金融信息等同意书

紧急支援事业

■ 紧急支援事业

- 因非本人归责事由遭遇火灾、犯罪或自然灾害而蒙受损失，且在韩国滞留外国人中符合紧急支援对象条件者，可得到生计支援、医疗支援、居住支援、社会福利设施使用支援、教育支

援、冬季燃料费支援，以及分娩、丧葬和燃料费支援等紧急支援。

- 支援对象
  - 符合下列任意一项内容者可成为紧急支援对象（《紧急福利支援法》第5条之2、《紧急福利支援法施行令》第1条之2）：
  - · 与韩国国民维持婚姻关系者
  - · 与韩籍配偶离婚或该配偶死亡且赡养韩籍直系尊卑属者
  - · 被认定为符合《难民法》第2条第2号规定之难民定义者
  - · 因非本人归责事由遭受火灾、犯罪或自然灾害而蒙受损失者
  - · 其他保健福利部长官认定为需要紧急支援者
- 申请方法
  - 可通过市郡区或保健福利呼叫中心129申请。

住宅支援

住宅特别供应

- 国民住宅等的特别供应
  - 身为多元文化家庭成员且与配偶在相同居住地居住3年以上者中，截至入住者征集公告日为无住宅户成员者，可根据相关机构最高负责人规定的优先顺序标准，按照一户一宅的标准在国民住宅建设量的10%范围内得到一次成为特别供应对象的机会。但是，在得到市道知事批准的情况下，可在超过10%的范围得到特别供应（《住宅供应相关规则》第35条第1项第18号）。
- 申请方法
  - 欲得到国民住宅等特别供应者应当按照相应共同住宅的特别公告明示的标准等提交下列材料申请（女性家族部，《2022年家庭事业指南（Ⅱ）》，2022年1月，参考409页）。
  - · 支援申请表一份
  - · 个人信息收集与使用同意书一份
  - · 无住宅证明材料：地方税各税目纳税证明或地方税未纳税证明（近10年全韩国范围，全体家庭成员）
  - * 符合住宅供应相关规则第53条的住宅所有者视为无住宅者
  - · 家庭关系证明
  - · 居民登录副本或抄本
  - · 收入证明材料

· 必要时：可确认取得国籍事实的材料（居民登录证复印件、取得国籍事实证明或基本证明(具体）、残疾人证明、可确认领养事实的材料（领养关系证明、亲养子领养关系证明）、非运营者确认备忘录)

妊娠与分娩

- 妊娠与分娩服务
  - 妊娠与分娩服务
    - 多元文化家庭可得到妊娠与分娩支援服务。
      - · 结婚移民者等可得到健康生活所需的营养健康相关教育、产前产后助手派遣、体检等医疗服务以及使用这些服务所需的外语翻译服务（《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9条）。

Gia đình đa văn hóa

Hỗ trợ thích ứng xã hội

- Tăng cường hiểu biết về đa văn hóa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phải nỗ lực chỉnh sửa và đưa ra xử lý cần thiết khác đối với chế độ còn bất hợp lí, quảng bá, giáo dục để công dân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hiểu và tôn trọng chế độ, văn hóa, lịch sử lẫn nhau (Điều 18,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Hỗ trợ thích ứng xã hội
  -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ược hỗ trợ về tư vấn và cung cấp thông tin, giáo dục các kiến thức và kiến thức cơ bản cần thiết trong sinh hoạt ở Hàn Quốc (Điều 11,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Thích ứng xã hội sau khi nhập tịch
    ·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ã nhập tịch được nhận các đãi ngộ sau từ ngày nhập tịch cho đến ngày quá 3 năm (Khoản 1, Khoản 3 Điều 12 và Điều 15,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Giáo dục tiếng Hàn cho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 Giáo dục văn hóa, chế độ Hàn Quốc
    √ Hỗ trợ giáo dục
    √ Hỗ trợ y tế
    √ Kiểm tra sức khỏe
    ※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ang nuôi con được sinh ra từ mối quan hệ kết hôn thực tế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và con của họ được nhận các ưu đãi trên (Khoản 2 Điều 12, Luật cơ bản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 Để người nhập cư có thể tiếp thu một cách hệ thống các thông tin

cần thiết cho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chương trình được chia thành 2 phần "Học tiếng Hàn" và "Tìm hiểu văn hóa Hàn Quốc". Người hoàn thành chương trình này tại cơ quan giáo dục chỉ định được miễn thi phỏng vấn và thi viết khi lấy quốc tịch. Nội dung chi tiết vui lòng tham khảo tại mạng lưới thông tin hội nhập xã hội (http://www.socinet.go.kr).

- Hỗ trợ sản phẩm thông tin viễn thông

· Cơ quan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có thể cung cấp các sản phẩm trí tuệ thông minh miễn phí hoặc có phí cho những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Khoản 3 Điều 49, Luật cơ bản về thông tin hóa trí tuệ và Điểm 3 Khoản 1 Điều 45,Điều 45 Khoản 1 Điểm 3, Thông tư thi hành Luật cơ bản về thông tin hóa trí tuệ).

- Hướng dẫn và tư vấn dân sự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sử dụng điện thoại hay mạng lưới thông tin điện tử đều có thể được tư vấn, hướng dẫn dân sự bằng tiếng nước ngoài từ Trung tâm hướng dẫn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hợp (Khoản 2 Điều 20,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và Điều 16, Thông tư thi hành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Trung tâm hướng dẫn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hợp vận hành Quầy dân sự điện tử, tư vấn điện tử và hướng dẫn thông tin tại Cổng thông tin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hợp (http://www.hikorea.go.kr) cùng số điện thoại (☎1345) để tư vấn bằng điện thoại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ung cấp thông tin

Cung cấp thông tin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sách hướng dẫn sinh hoạt ghi chép các thông tin cơ bản cần thiết khi sống tại Hàn Quốc như thông tin chính sác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oa, các trường hợp thành đạt của người nhập cư tại Hàn Quốc, giới thiệu các cơ quan như nhà trẻ, giới thiệu văn hóa Hàn Quốc v.v (Khoản 1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Khoản 1 Điều 11, Thông tư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sách hướng dẫn sử dụng trong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các sách hướng dẫn đa dạng về sinh hoạt ở Hàn Quốc dành cho nam và nữ kết hôn nhập cư tại website Danuri (http://www.liveinkorea.kr) - cổng thông tin về gia đình đa văn hóa.

Hỗ trợ giáo dục

Giáo dục tiếng Hàn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được hỗ trợ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âng cao khả năng giao tiếp (Khoản 1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vợ/chồng và thành viên gia đình của họ nếu khó tiếp cận với dịch vụ giáo dục do nơi cư trú hay hoàn cảnh gia đình, có thể được hỗ trợ giáo dục bằng nhiều cách đa dạng như giáo dục từ xa hay giáo dục tại nhà (Khoản 3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ọc tiếng Hàn là việc rất cần thiết để sống thuận lợi và hiểu văn hóa Hàn Quốc. Có thể học tiếng Hàn tại nhiều cơ quan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iếng Hàn online cũng ngày càng phát triển để hỗ trợ giáo dục tiếng Hàn dễ dàng hơn ngay tại nhà, vào thời gian mong muốn [Minwon24(http://www.minwon.go.kr)].

· Giáo dục trực tuyến

√ Trung tâm Sejong Nuri cung cấp tài liệu, video giáo dục tiếng Hàn

√ Trường đại học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với phong trào học tập

√ Tổ chức kiều bào tại nước ngoài cung cấp chương trình văn hóa Hàn Quốc, học tiếng Hàn

√ Viện giáo dục quốc tế quốc gia hướng dẫn các trang web học tiếng Hàn như KBS, đại học Pai Chai, đại học Sogang

√ Trung tâm học tiếng Hàn Durian EBS

√ Kể chuyện cổ tích đa văn hóa tại Thư viện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quốc gia

· Giáo dục offline

√ Tìm thông tin các cơ quan giáo dục tiếng Hàn offline ở từng địa phương trên toàn quốc tại Trang web HiKorea

√ Tham khảo thông tin lớp học tiếng Hàn tại Trang web của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ở từng địa phương

- Giáo dục khác
  - Giáo dục gia đình (Tham khảo trang 171, "Hướng dẫn chương trình gia đình năm 2022 (I)", 〈01.2022〉, Bộ Gia đình và Bình đẳng giới).

<table>
<tr><th>Hạng mục</th><th colspan="2">Nội dung</th></tr>
<tr><td>Nội dung</td><td colspan="2">• Tăng thêm lòng tin và tình cảm yêu thương thông qua trò chuyện, giao tiếp trong gia đình
• Tăng thêm hiểu biết về vai trò đúng đắn của bố mẹ
• Tăng cường giao tiếp và nuôi dưỡng bản sắc đa văn hóa bằng cách thúc đẩy sử dụng đa ngôn ngữ trong gia đình</td></tr>
<tr><td>Đối tượng</td><td colspan="2">• Gia đình đa văn hóa, v.v (tham khảo trang 149, Định nghĩa thành viên</td></tr>
<tr><td rowspan="2">Nội dung chi tiết</td><td>Bắt buộc chung (14 giờ trở lên)</td><td>Lựa chọn (ví dụ 26 giờ trở lên)</td></tr>
<tr><td>• Chương trình xây dựng môi trường gia đình đa ngôn ngữ (10 tiếng mỗi năm/ 20 hộ gia đình)
※ Trung tâm có phân bổ giáo viên đa ngôn ngữ tổ chức chương trình có thời lượng 160 giờ trở lên
• Cung cấp thông tin nhập học và thi tuyển cho trẻ trong độ tuổi đến trường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Mỗi năm 4 giờ trở lên, dành cho đối tượng phụ huynh)
※ Nửa đầu năm và nửa cuối năm, mỗi đợt 1 lần</td><td>• Chương trình giao tiếp trong gia đình
• Chương trình nâng cao quan hệ gia đình
• Hiểu biết về kết hôn và gia đình
• Ý nghĩa và vai trò của gia đình
• Giáo dục người cha
• Chương trình nâng cao niềm tự hào và quan hệ giữa cha mẹ-con cái
• Chương trình giáo dục con cái
• Giáo dục về vai trò của cha mẹ, hướng dẫn về sức khỏe con cái
• Hướng dẫn con cái về sinh hoạt
• Chương trình hỗ trợ quá trình phát triển của con cái, v.v.</td></tr>
</table>

Ⅷ. 법제처 법나들이

애들 키우랴,
일하느랴 어느새
나이만 먹고~
허억
감사하게도 이젠
직장도 가정도
자리가 잡혀가지만
앙앙
우악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 공허함은
뭘까…
끙…
그녀는 자신의 일을
위해 꼭 배우고 싶은
전공심화과정이
있었다.

와장창
엄마!
자기야,
내가 갈게!
…

헐레
벌떡
아냐! 내가
갈게!!
우지끈
의야
문제는 지금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
친구에게
상담중

물론 있어!
뭐?!

사이버대학!
에엥?

사이버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있잖아.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없을텐데…
내 직장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얻고 싶다고!

너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진희진희, 소식이 느리군용~

코로나19 이후 원격 학습의 중요성도 커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어 원격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어.
성인
학습자
수요↑
비대면 수업!

그래서 원격대학의 대학원 종류를 일반대학원과
UPGRAD!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 제외)까지 확대한대!

오~
사이버대학!
업무 후에
집에서
편안하게~
끙...

비는 시간
일정
중간중간
잠깐, 이거
나한테
딱이잖아?!
잘놀고
있어~
집에서
수업을…
네~
헉

괜찮
은데?!
두근
그치?
후훗

Hi
Hi~!
온라인 포럼도
참여할 수 있고
화상회의로
교수님이랑
동기들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잘 생각해 봐~!
덜커덩
덜커덩
…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
머뭇 머뭇
…
가족회의

그, 그러니까… 특히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된대.
내가 원하던 과정도 있어!

혹시 반대하는…!
자기야, 쉿!
그만하면 됐어!
…!

난 찬성!
나도 찬성!

난 대찬성!
!!

당신은 항상 공부하고 싶어했잖아.
우리가 도울게!
수업료는 내 용돈이라도 아껴서 지원해 줄게.
통장
헤헤
다들…! 고마워!
찡…
……
하지만 수업료 지원은 사양할게!
두둥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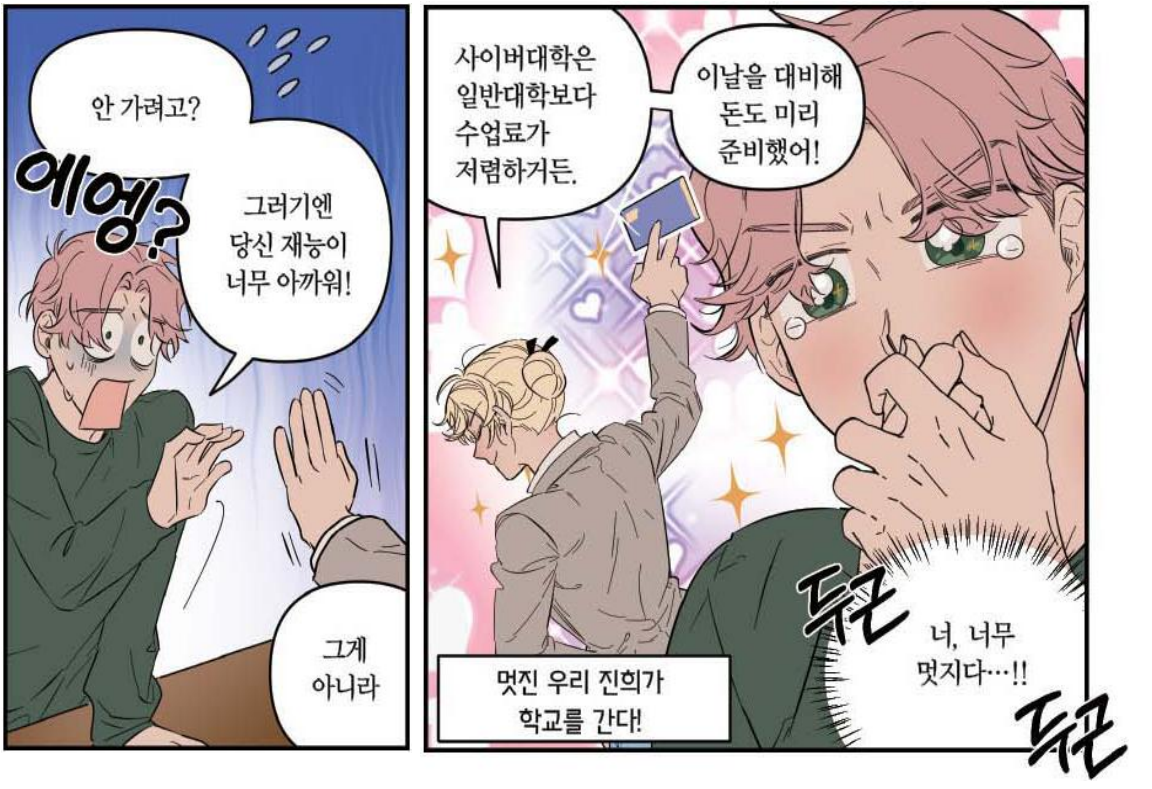
안 가려고?
에엥?
그러기엔 당신 재능이 너무 아까워!
그게 아니라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보다 수업료가 저렴하거든.
이날을 대비해 돈도 미리 준비했어!
멋진 우리 진희가 학교를 간다!
두근
너, 너무 멋지다…!!
두근

-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MEMO

MEMO